제817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1.기준제정기관 지정 요건(신설)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 요건을 정함2.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신설)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을 정함3.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신설)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함4.교육연수 기간, 대상, 내용 등 관련 사항(신설)교육연수 기간, 대상, 내용 등 관련 사항을 정함5.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요건(신설)감정평가법인의 최소 구성원 요건을 상시근무자에 한함	1.비중요 2.비중요3.비중요4.비중요 5.비중요
2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1.해체계획 수립 기준 추가(신설) 해체계획 수립 기준 추가 ①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의 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도록 사전조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 ②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사항(해당 시설물 이동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해체계획서에 작성하도록 규정 ③ 도로나 보행로 인접 건축물을 해체 시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 도로나 보행로에 전도·낙하하지 않도록 해체 작업순서 작성항목 신설	1.비중요
3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요양급여 보상한도(강화) 시행규칙에서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함에 따라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보상한도를 수정한 내용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안전부)	1.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 제외(신설) 기존 변경인증 면제 대상에서 안전회로의 재질 변경 등은 제외함 2.중대한 사고·고장 발생시 결함기록 보존 의무(신설) 관리주체 등에 대해 결함확인장치가 설치된 승강기의 사고·고장 기록을 보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1.비중요 2.비중요
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안전부)	1.책임보험 가입사실 입력기한 규정(강화) 보험의 가입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을 14일로 규정함 2.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고장의 범위 추가(신설) 운반구와 균형추 등에 부착된 부품이 추락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추가함	1.비중요 2.비중요
6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소방청)	1.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신설)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9조(표준형), 제10조(간이형), 제11조(표준형)	1.비중요
7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개정안 (환경부)	1.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 삭제(강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1.비중요
8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3) 개정안	1.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강화)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 헤어스트레이트너, 컬링 아이언 및 물 채움 발관리기의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헤어 스트레이트너 및 컬링 아이언에 대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상 위험.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기기를 사용하고 기기를 식힌다. – 기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기기를 방치하지 않는다. – 항상 내열성이 있고 안정된 편평한 표면 위에 스탠드(있는 경우)와 함께 기기를 놓는다. 물 채움 발관리기에 대한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 이 기기는 앉아있는 사람의 발 아래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 경고 : 기기에서 물이 새는 경우 사용하지 말 것. 경고 : 열에 무감각한 사람은 사용 시 주의할 것.	
9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7)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강화) (추가) 사용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 - 상점, 사무실, 기타 작업 환경에서의 직원용 주방 구역 - 농가 - 호텔, 모텔, 기타 주거형 환경을 이용하는 고객 - 비앤비(bed and breakfast) 환경 - 건물 단지, 아파트, 빨래방에서의 공동 사용 구역	
1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안 (환경부)	1.인천 강화 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강화) ㅇ 인천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의 폐수배출시설 중 1차 금속제조업(C24)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T-N 배출허용기준을 50mg/L이하, 그 외 업종은 55mg/L이하로 설정	1.비중요
11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	1.선임계리사 제도개선(신설) 1)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2)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토록 절차 강화 3)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 준수 4)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	
1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선임계리사 제도개선(신설)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에 준해 강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사항을 연1회 이상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수시 보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1.비중요
1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신청 요건(강화) ○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중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 등록 시 제출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이 필요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의 범위를 정비함 2.의약품 운송업무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강화) ○ 의약품 운송 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구비하고 온도조작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품목 판매업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의약품 운송기록에 온도기록을 포함 3.의약품 도매상 의무교육 대상 확대(강화)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적격업소로 인정받은 의약품 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는 1년마다 연간 8시간 이상, 적격업소 외 의약품 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관리자가 없는 경우는 종사자 1명이상)는 2년 마다 연간 8시간 이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의약품 공급·품질관리 업무의 위탁자가 위탁할 업무를 문서로 적도록 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14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정안 (해양수산부)	1.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지정 및 사후관리(신설) null	1.비중요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홈네트워크 보안성 강화(신설) o 홈네트워크 설비(망, 장비, 사용기기)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홈네트워크 보안(세대별 망분리, 장비의 보안요구사항 충족, 정보보호인증기기 설치 등) 규정 신설 o 고시개정안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될 경우, 홈네트워크 설비 사업자의 경우, 보안사항 준수에 따라 시행연도에 공사비 일부(약3%) 정도 상승될 수 있음 - 다만, 보안요구사항 적용 장비 등 설치가 보편화되면 해당 장비 등의 가격 경쟁에 따라 총 공사비 등에 큰 변동은 없고 보안 강화에 따라 해킹 등 피해가 예방되어 안정적인 홈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	1.비중요
16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 고시	1.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개정안 (인사혁신처)	시(강화)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17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80)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전기팬(천장형 팬)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강화) ㅇ 국제표준 (IEC 60335-2-80 Edition 3.0) 부합화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7.12 추가] 천장형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경고를 명시해야 한다. 경고: 비정상적인 회전이 관찰되는 경우, 즉시 천장형 팬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자, 서비스 대리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문의하십시오. 천장형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유지보수 주기 및 유지보수 방법 - 기기의 무게(kg) - 현가 안전 장치의 부품 교체는 제조자, 서비스 대리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 브러시를 포함한 전동기가 내장된 팬의 설명서에는 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전동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활성 브러시 또는 중립 브러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두 브러시와 접지 브러시를 동시에 교체하십시오. 브러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교체해야 합니다. [7.12.1 추가] 천장형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후크 또는 기타 장치와 같은 천장 부탁용 고정 수단은 천장형 팬 무게의 4배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고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 현가 장치의 설치는 제조자, 서비스 대리점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해야 함을 명시한다. - 팬의 날개가 바닥에서 최소 2.3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오도록 기기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 이 목적에 적합한 구조로 된 팬에 설치하여도 되는 등기구의 모델 또는 형식 기준 기타 팬의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8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수송 목적 포장재 포장기준 마련(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개정안 (환경부)	○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재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의 포장기준 마련	